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과 전망

정호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 출범 배경과 목적

2000년 8월에 공식 출범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해주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0년 1월 12일 제정·공포)』과 동법 『시행령(2000년 7월 10일 제정·공포)』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이 결성한 『유족회』 등이 오랫동안 제기를 해 온 '민주화운동 및 관련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그 대안

을 마련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점에서 배경과 목적이 유사하다. 그러나 두 위원회의 수행 업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총 85건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에 역점을 둔다면, 위원회는 1969년 8월 7일 '3선 개헌' 이후 발생한 모든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심의하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실제 방안의 마련 및 집행이라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 업무 구성과 활동내용

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① 신청인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 여부를 심의·결정, ②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③ 관련자로 인정된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 ④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 결정, ⑤ 민주화운동 관련 추모단체 지원 등이 그것이다. 위원회는 위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2000년 8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제1차 신청에서는 8,440건(보상 909건, 명예회복 7,531건)이, 제2차 신청에서는 2,367건(보상 386건, 명예회복 1,981건)이 접수되어 총 10,807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2000년 11월 14일 『본 위원회』를 개최

하여 첫 개별 안건을 심의한 이래, 2003년 12월 말 현재 신청사건의 64.4%인 6,963건을 심의했다. 현재까지는 1990년대 초반까지를 시점으로 이때까지 발생했던 사안들이 주로 다루어졌다. 이 시기에 포함되지만, 더 정밀한 분석과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한 사건들도 있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활동이나 특별법 제정 등과 같이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사안들이나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위원회는 보다 신속한 심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개최하던 『본 위원회』를 2003년 4월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개최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3년 12월 말까지 심의 사건 가운데 5,608건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인정된 사망자와 상이자 226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관련자에 대한 심의와 보상금 지급 등은 『관련자 및유족여부심사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처럼 일선 시·군·구에서 접수를 받아 최종 결정되기까지 다소 복잡한 경로를 밟는 점, 위원회가 출범할 때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건들의 신청이 이루어진 점, 1969년 '3선 개헌'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심의 대상으로 하여 조사 및 검토할 내용이 많은 점,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결정이 현재에도 민감한 사항인 경우가 종종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

인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법개정을 위한 노력에 맞추어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가 그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2001년 11월부터 추진된 '법 개정'이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현행법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마련한 '명예회복 조치'를 2003년 12월 말에 『본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따라서 2004년에는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원회는 '민주공원' 조성의 업무도 추진하

고 있다. 이는 2001년 11월 경 『본 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10대 기념사업' 가운데 '민주공원'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할 목적으로 조성되는 '민주공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약 27,000평 규모로 계획 중이다. 이 사업은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난항을 겪고 있지만,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더 많은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원만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 평가와 전망

위원회는 현재의 업무가 불행했던 한국의 과거사를 청산 및 정리하는 작업의 일환이라는 긍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심의가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 동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물론 신청인들 또는 관련단체들의 주장과 위원회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법적 요건에서 민주화운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규정된 명예회복의 대상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제외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과 법의 특성상, 과거의 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사건들도 있어 난항을 겪는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과 같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처벌한 법률이 현재에도 존재하며,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의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이외에도 위원회의 업무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위원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신속성이 확보되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주화운동의 이상과 실천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그리하여 더욱 민주화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요구된다.